

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스도의 교회(제자회) 연금 기금의 연금 플랜("연금 플랜") 및 그리스도의 교회(제자회) 연금 기금의 세금 이연 은퇴 계좌("TDRA")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- (i) 그리스도의 교회(제자회)의 안수받은 목회자이거나
- (ii) Stone-Campbell(회복) 운동의 일부인 교회의 안수받은 목회자.

그리스도의 교회(제자회) 또는 Stone-Campbell(회복) 운동의 교회 또는 교회 관련 단체에 고용 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상황에 해당하면 연금 플랜 및/또는 세금 이연 은퇴 계좌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- **501(c)(3) 고용.** 미국 세법("법률")의 501(c)(3)조에 따라 비영리 단체에 고용되어 있고 해당 조직에서 목회 사역 수행에 따른 봉사를 하고 있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- **정부 및 영리 기관의 고용.** 법률 501(c)(3)조에 따른 기관이 아닌 기타 기관에 고용되어 있고 해당 기관에서 목회 사역 수행에 따른 봉사를 하고 있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(예: 주립 교도소, 미군 또는 영리 병원의 교목).
- **자영업.** 자영업자이며 목회 사역 수행에 따른 봉사를 하고 있다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위의 각 상황에서 연금 플랜에 대한 회비 및/또는 세금 이연 은퇴 계좌에 대한 납입금은 사역 수행에 따른 봉사로 받은 급여 또는 근로 소득에 대해서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주택 수당은 사역 수행에 따른 봉사와 관련된 수령금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. 그러므로 이러한 각각의 목적을 위해 "사역 수행 중"인 봉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

## I. 사역 수행에 따른 봉사에 대한 지침

국세청("IRS")의 지침에 따르면 "사역 수행 중"인 안수받은 목회자의 봉사에는 일반적으로 다음이 포함됩니다.

- 종교 단체를 위해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세례, 영성체, 결혼, 장례식, 아픈 사람을 위한 기도와 같은 성직 업무의 수행.
- 종교 단체를 위해 수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종교 예배의 수행.
- 교회 또는 교단의 권한 하에 있는 종교 단체(종교 위원회, 협회 및 해당 단체의 통합 기관 포함)의 통제, 수행 및 유지(해당 단체의 활동 지시, 관리 또는 홍보 등). 여기에는 교회나 교단이 통제하거나 그에 소속된 종교 단체의 관리자 또는 임원인 안수받은 목회자가 포함됨.
- 신학교에서의 교육 및 행정 업무 수행.

- 종교 단체가 아니거나 종교 단체의 통합 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는 단체를 위해 교회의 특정 임무 또는 지정에 따라 목회자가 수행하는 봉사이며 성직 업무의 수행이나 종교 예배와 관련되지 않은 활동일 수 있음. 해당 임명 또는 지정은 목회자의 고용 전에 발표되어야 하며 교회의 목적 달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.
- 목회자가 미국 정부, 주 정부, 미국의 영토 또는 점유지 또는 전술한 정부 기관 또는 캘럼비아 특별구의 정치적 하위 단체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수행한 봉사로 해당 봉사가 일반적인 목회자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.<sup>1</sup>
- 종교 서적이나 기사 작성.
- 교회와 관련된 또는 면세 병원이나 양로원에서 교목으로 봉사 수행.
- 수도회의 지시와 요구에 따라 수도회의 일원으로 수행한 봉사.

IRS 지침에 따라 다음은 목회자의 사역 수행에 따른 봉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.

- 종교 단체가 아닌 곳에서 수행한 성직 업무 또는 종교 예배 외의 봉사. 단, 목회자의 교회에서 임명하거나 지정한 봉사는 예외로 함.

IRS에서는 사역 수행에 따른 봉사의 해당 여부를 평가할 때 해당 활동의 성격 및 양을 모두 고려합니다. 이러한 판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목회자의 봉사가 사역 수행에 따른 봉사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IRS, 조세 법원 및 법원이 항상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. 연금 기금에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여 귀하가 수행하고 있는 봉사가 사역 수행에 따른 봉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.

## II. 사역 수행에 따른 봉사의 예시

다음은 사역 수행에 따른 봉사의 예시입니다.

- 정기적으로 성직 업무와 종교 예배를 수행하는 안수받은 청년 목회자.
- 전임으로 비종교적 직업에 종사하면서도 결혼, 세례, 장례식 봉사를 수행하는 안수받은 목회자(단, 성직 업무와 관련해서만 해당).
- 대학의 교목으로 근무하는 안수받은 목회자이며 교목으로서의 직무에 종교 예배, 학생들의 영성 상담, 종교 관련 강의가 포함되는 경우.
- 종교 단체의 이사회에서 고용하여 해당 부서 중 하나의 이사로 임명된 안수받은 목회자. 여기에서 해당 이사회는 교단의 권한 아래 운영되는 종교 단체의 소속 기관임.

<sup>1</sup> 사역 수행에 따른 봉사를 하는 목회자는 일반적으로 SECA 세금이 부과되는 반면, 이 단락에 설명한 정부 기관의 목회자는 일반적으로 교목으로 간주되어 SECA 세금이 아닌 FICA 세금이 적용됩니다. 다음 참조: 연방 세무 규정집. 세무 규정집 1.1402(c)-5(c)(3). 또한 군대의 교목은 연금 제도 및 세금 이연 은퇴 계좌에 참여할 수 있지만 해당 봉사는 주택 수당 목적을 위한 사역 수행에 따른 봉사로 간주되지 않습니다. 다음 참조: 연방 세무 규정집. 세무 규정집 1.107-1(a).

- 교회의 역사를 설명하는 책의 출판과 관련하여 회사에 조언을 제공하도록 교회에서 임명한 안수받은 목회자.
- 교회의 행정 담당자로 근무하며 교회의 재정, 모금 프로그램, 공장 및 장비, 주방 운영 및 가사 감독 등 교회 및 통합 기관의 관리 및 유지와 관련된 임무를 맡고 있는 안수받은 목회자.
- 종교, 비영리 또는 영리 병원에서 교목으로 봉사하는 안수받은 목회자.
- 교회가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안수받은 목회자.
- 교회에 소속된 대학의 교수진 또는 행정관으로 봉사하는 안수받은 목회자.
- 자신의 종교 교단의 일반 사역 기관에서 행정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안수받은 목회자.

### III. 사역 수행에 따른 봉사로 간주하지 않는 봉사의 예시

다음은 사역 수행에 따른 봉사로 간주하지 않는 봉사의 예시입니다.

- 교회나 교단으로부터 안수를 받지 않고 교회 합창단을 지휘하고, 교회의 음악 프로그램을 감독하고, 예배 중에 오르간을 연주하는 교회의 음악 관련 목회자.
- 병원 방문 및 새로운 교인 방문을 담당하며 안수받은 목회자가 아닌 방문 목회자.
- 영적 사역과 상담을 통해 중독성 장애의 회복을 돋는 기관의 전임 상담사로 일하는 안수받은 목회자.
- 비종교 대학에서 역사와 수학을 가르치는 안수받은 목회자.
- 비종교 자선 단체에 고용되어 자문 위원회를 지휘하고 문화 프로그램을 조율하는 안수받은 목회자.
- 초교파 신학교의 행정직으로 고용된 안수받은 목회자.

#### 연금 기금

P.O. Box 6251, Indianapolis, Indiana 46206-6251

수신자 부담 전화: 1.866.495.7322 • 전화: 317.634.4504 • 팩스: 317.634.4071

이메일: [pfcc1@pensionfund.org](mailto:pfcc1@pensionfund.org) • 웹사이트: [www.pensionfund.org](http://www.pensionfund.org)